

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 역할 강화를 위한
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
과 업 지 시 서

2024. 1.



과업개요

1. 과업명 :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 역할 강화를 위한
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

2. 계약기간 : 계약일 ~ 4개월 간

3. 소요예산 : 59,664,780원 (VAT포함)

4. 과업배경 및 목적

- 최근 해외 인프라 시장은 투자개발형사업(PPP) 중심의 발주와 친환경 분야의 성장 등 시장환경 변화에 직면
 - 발주국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단순 도급 방식보다는 투자개발형, 시공사금융형 등의 방식으로 전환 모색
 - 특히, 탄소중립 기조의 확산과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신재생에너지, 원자력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확대되는 흐름
- 이에 따라, 우리기업 해외투자개발형사업 전문 지원기관으로 설립된 KIND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,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 기반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 대두
- 기관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제역할을 다하기 위한 조직 체계 마련 및 위상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법적·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

5. 계약방법 : 제한경쟁입찰 (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)

1. 세부 과업 내용

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 역할 정립

- KIND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내·외 유관기관 사례분석 등 현황 조사
 - 국내·외 유관기관(국내 인프라·금융 공기업, 국외 DFI 등)의 설립 근거 법령 등 관련 자료 조사·분석
- 해외건설촉진법 등 여타 법령의 관련 규정 등을 통해 KIND 업무 영역 및 범위(투자대상 및 방식 등), 해외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정의 등 재정립
 -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, 도시개발법,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, 건설산업기본법 등 업무영역 및 범위 설정을 위한 관련 법률 검토
 - 브라운필드 투자, 우리기업 기투자자산에 대한 EXIT 지원 투자, 기관 수익 목적 투자 등 다양한 투자 형태 및 방식* 등에 대한 검토 및 구체적인 법률 적용 방안 제시
- * 공기업 등이 발굴개발하여 투자하는 해외투자개발사업 지원 강화 및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참여 확대(O&M 등) 측면에서의 검토 포함
- 해외인프라도시개발분야 G2G계약 전담 또는 수행기관 역할 수행을 위한 근거 마련
 - 대외무역법 상의 G2G계약 전담기관 지정과 별개로 KIND 특별법을 통한 G2G계약 전담 또는 수행기관 지정 필요성 제시 및 관련 근거 법령 마련 등 제반 사항 검토

②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검토

- 공공기관 관계 법령 등에 따른 법령 및 제도 정비 사항 검토
 -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등에 따른 여타 법률(상법, 해외건설 촉진법 등)과의 충돌 문제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
 - 특별법에 임원선임절차에 관한 근거규정(안) 마련
 -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운영 필요성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
- 금융투자 관련 공공기관으로서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기관 손실금 정부 보전 의무, 외화 채권 발행 등과 관련된 근거규정(안) 마련
 - 재무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내·외 유관기관의 법률 및 제도 분석, 법제도 마련 필요성 및 근거규정(안) 제시

③ 「(가칭)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법」 제정안 마련

- 국내·외 공공기관 관계법령 등을 토대로 세부 과업 ①~② 검토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특별법 제정안 제시
 -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법 제정안 조문 및 조문별 근거(해설) 제시
 - KIND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제·개정이 필요한 다른법령과 행정규칙 등을 목록화하고 제·개정 필요 사항 제시

※ 과업에 대한 보고서는 국내·외 유관기관 현황 및 구체적인 사례에
기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, 계약체결 후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과거
연구용역 등의 관련 자료 제공 예정

2. 과업수행 일정

① 착수보고 :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

- 보고 내용 :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, 세부 계획(일정)표, 참여 인력 등
- 보고 방법 : 착수보고서 대면 제출

② 중간보고(1차) :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

- 보고 내용 : 과업의 추진상황 및 중간 산출물
- 보고 방법 : 추진상황 보고서 및 중간 산출물 대면 제출

③ 중간보고(2차) :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

- 보고 내용 : 과업의 추진상황 및 중간 산출물
- 보고 방법 : 추진상황 보고서 및 중간 산출물 대면 제출

※ 2차 중간보고일까지 최종산출물에 준하는 결과물이 보고되어야 함

④ 최종보고 :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

- 보고 내용 : 중간보고 결과 보완 지시한 최종 용역결과 보고
- 보고 방법 : 최종 진행 보고서 및 최종산출물 대면 제출

⑤ 성과품 작성 및 제출

- 착수보고, 중간보고, 최종보고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제출
- 계약종료일 이전 최종 산출물 제출(한글 및 PDF 형태)

※ 상기 일정 외 수시 보고 및 협의 요청 가능하며, 이에 응해야 함

3. 과업수행 지침

① 일반사항

-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의해 수행하며,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공사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

- 제안업체는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진전략, 사업범위 및 업무 내용 등을 명확하게 제안서에 기술하고 산출근거와 증빙을 첨부하여야 함
-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은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고,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함
- 과업수행업체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와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, 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, 협의된 사항은 본 과업내용에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
- 제안요청서, 과업지시서, 협상내역서 등의 문구,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공사의 의견에 따라야 함
-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각종 제반경비는 과업수행업체의 부담을 원칙으로 함

② 과업수행팀의 구성 및 운영

-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,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참여할 인력을 3명 이상(책임연구원 포함) 편성·운영하여야 함
- 과업수행업체는 본 과업 연구팀 구성 및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하여야 함
- 공사는 과업 참여 인력이 과업수행상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과업수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
- 과업수행업체는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체사유서를 첨부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음

③ 자료 인용 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

- 과업수행업체는 최신의 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
- 과업수행 시 사용하는 도구, 업무설계서, 솔루션 등은 상거래 상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, 이를 위반한 경우 과업수행업체의 책임으로 공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- 과업수행에 필요한 통계자료 등은 인용한 출처를 명기하여야 하며, 과업수행에 인용되는 각종 통계자료 등은 반드시 자료의 타당성, 실효성, 신뢰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활용하여야 함
- 사업기간 또는 최종검사 이후라도 인용 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함

④ 과업내용의 변경 및 조정

- 과업의 수행범위는 공사의 제안요청서, 과업지시서 및 협상내역서 등의 내용으로 하되, 과업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음
- 과업과 관련된 공사의 각종 공문서와 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·보완·변경된 과업의 내용은 과업지시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
⑤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조건

- 연구인력의 인원 조정 또는 연구인력 등급 변경시
- 과업량의 증가 또는 감소 등으로 과업기간 변경시
- 기타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제 여건의 변동시

⑥ 소유권에 관한 사항

- 과업완료시 성과물은 보고서(USB 등 저장매체 활용 가능)의 형태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, 과업 수행으로 산출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공사에 귀속됨
- 모든 과업성과물은 공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

⑦ 하자 및 책임소재 등

- 과업수행업체는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 착오 등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에 피해가 있을 경우 이에 관련한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지며,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
-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업체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업체 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
- 공사는 본 과업의 추진일정 준수 및 용역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과업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공사에서 주관하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검사요원은 공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전문가로 함
- 과업 진행 검사는 제반 과업수행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, 검사내용에 대해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,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

⑧ 보안 대책

-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및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
- 연구결과는 사전승인 없이 연구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,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공사가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

9]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조치

- 아래사항의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과업수행업체는 어떠한 보상도 요구할 수 없음
- 과업지시서, 협상에 의한 계약인 경우 협상내역서, 기타 계약 관련 서류에 명기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
- 성과품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규격(내용의 수준)에 미달되게 작성된 경우
- 보안사항을 유출하거나 관련 자료를 악용하는 등의 경우
- 과업의 수행에 있어 고의,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의 지연되거나 공사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- 과업수행업체의 부도 또는 기타 경영상 중대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용역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